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768회 2023. 7. 2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부여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55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66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67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68호 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69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 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72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 33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1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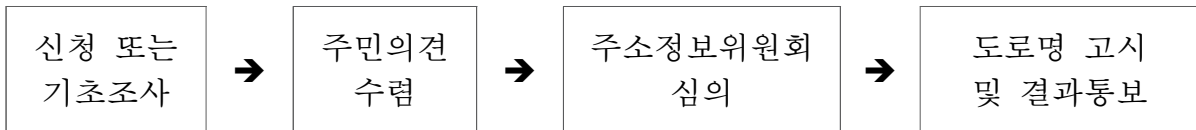
2023. 7.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고 시 일 : 2023. 7. 24.
-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 3. 고시내용 :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내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 도로명 부여 절차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조서

연번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로	행복1로	청라동	138-25	가정동	39-6	578	23	20	연희동 가정1동	행복주택단지의 남쪽에서 첫 번째 만나는 도로에서 착안
2	로	행복2로	가정동	56-8	청라동	138-8	593	21	20	연희동 가정1동	행복주택단지의 남쪽에서 두 번째 만나는 도로에서 착안
3	로	행복3로	가정동	57	심곡동	129-27	834	12	20	연희동 가정1동	행복주택단지의 남쪽에서 세 번째 만나는 도로에서 착안

○ 도로구간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1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36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7.2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7-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16-1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36 (당하동)	20200420	'서로름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번째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96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7로 29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태님이 영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일곱번째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2-21, 392-22, 392-23, 392-24, 392-25	인천광역시 서구 목항로206번길 10-20 (원창동)	20131202	목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향리동 9-59	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177 (향리동)	20101111	향리대로 동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5-2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6 (당하동)	20200420	'서로름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네번째 도로	KR필조타워
6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8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320 (원당동)	20200420	'서로름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번째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4-2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16번길 10 (가좌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7-24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6번길 10 (가좌동)	건물 말소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5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157(2023.3.10.)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관련 기준의 명확화 및 소송비용 회수 포기 사유의 구체화에 따라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 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목인 소송비용 「청구」를 소송비용 「회수」로 변경(안 제23조)
- 나. 소송비용 회수 관련 절차 및 기준의 명확화(안 제23조)
- 다. 소송비용 회수 포기 사유의 구체화(안 제23조의 2)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4,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157(2023.3.10.)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소송 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관련 기준의 명확화 및 소송비용 회수 포기 사유의 구체화에 따라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목인 소송비용 「청구」를 소송비용 「회수」로 변경(안 제23조)
- 나. 소송비용 회수 관련 절차 및 기준의 명확화(안 제23조)
- 다. 소송비용 회수 포기 사유의 구체화(안 제23조의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0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소송비용 청구)”를“(소송비용 회수)”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소송: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간주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포기 여부를 작성한 검토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②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 지식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구청장 등을 피고로 잘 못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매우 낮은 경우(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되는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 <u>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u></p> <p>1. <u>상대방의 재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u></p> <p>2. <u>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u></p> <p>3. <u>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p> <p><u><신 설></u></p>	<p>제23조(소송비용 회수) ① <u>제17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u></p> <p>1. <u>행정소송: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간주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포기 여부를 작성한 검토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u></p> <p>2. <u>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u></p> <p><u><삭 제></u></p> <p>② <u>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u></p>

② (생략)

<신설>

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3조의2(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 지식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구청장 등을 피고로 잘 못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매우 낮은 경우(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되는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555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자동인증기 신규 구입에 따른 등록 및 폐기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3년 7월 24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블로대곡동장인 / 민원전용1 (인증기)	직인	2.1cm x 2.1cm	자동인증기 신규 구입에 따른 등록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 블로대곡동민원전용1 (인증기)	직인	2.4cm x 2.4cm	자동인증기 신규 구입에 따른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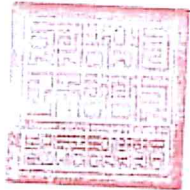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불로대곡동장인 / 민원전용(인증기)	직인	2.1cm x 2.1cm	자동인증기 신규 구입에 따른 공인 폐기	
2	인천광역시서구정장인 / 불로대곡동민원전용(인증기)	직인	2.4cm x 2.4cm	자동인증기 신규 구입에 따른 공인 폐기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블로대곡동장인 / 민원전용1 (인증기)	자동인증기 신규 구입 에 따른 공인 등록	2023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 블로대곡동민원전용1 (인증기)	자동인증기 신규 구입 에 따른 공인 등록	2023년 7월 24일	

□ 폐기 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블로대곡동장인 / 민원전용 (인증기)	자동인증기 신규 구입에 따른 공인 폐기	2023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 블로대곡동민원전용 (인증기)	자동인증기 신규 구입에 따른 공인 폐기	2023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566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0-213호(2020.12.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 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 서구 원창동 213-61번지 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 명칭 : 원창동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 면적 : 353m²
- 규모 : L=42m, B=7.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주식회사 정원도시개발 대표이사 박정서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68(왕길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06. 30.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외 권리	
계				353	353	-	-				
1	원창동	213-61	대	137	137	주식회사 **도시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왕길동)				
2	원창동	213-65	대	73	73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번길 **, *동 ***호(간석동, *****)	중소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지상권 설정	
3	원창동	220-6	잡	91	91	주식회사 **도시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왕길동)				
4	원창동	220-8	잡	52	52	국 (기획재정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2023. 7. 24. ~ 8. 7.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567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64-4번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A-1)(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13	2,014.1	1	288.6	1	288.6	
		2	564.8	2	564.8	
		3	837.5	3-1	414.5	
				3-2	423.0	
		4	323.2	4	323.2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기정		변경		변경사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3	3	837.5	3-1	414.5	○ 획지계획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신축하고자 함
			3-2	423.0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4, 서구 서곶로 307)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됨)

의견서

일시	2023. . .
성명	
주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락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3-1568호

도시관리계획(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56-6번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 및 다세대주택용지(A-1)(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A-1	5	2,767.9	1	304.8	1	304.8	
			2	328.1	2	328.1	
			3	226.7	3	226.7	
			4	226.8	4	226.8	
			5	285.0	5	285.0	
			6	304.5	-	-	A-2로 변경
			7	212.0	7	212.0	
			8	249.9	8	249.9	
			9	329.0	9	329.0	
			10	301.1	10	301.1	

· 근린생활시설용지(A-2)(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치	면적(㎡)	
A-2	3	3,144.0	1	342.5	1	342.5	
			2	336.9	2	336.9	
			3	320.9	3	320.9	
			4	264.5	4	264.5	
			5	300.9	5	300.9	
			6	355.4	6	355.4	
			7	340.7	7	340.7	
			8	269.5	8	269.5	
			9	269.5	9	269.5	
			10	343.2	10	343.2	
	5	2,767.9	-	-	6	304.5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 및 다세대주택용지(A-1)(변경)

도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기정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율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별표2의 A-1		
	변경	4, 5(1~5, 7~10), 6, 7, 8	배 치	· 별표3의 A-1	
			색 채	· 별표4의 A-1	
			건 축 선	기정	· 중로2-174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4(5~6), 5(5~6), 6(5~6), 7(5~6)
				변경	· 중로2-174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4(5~6), 5(5), 6(5~6), 7(5~6)

· 근린생활시설용지(A-2)(변경)

도면 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2	기정	3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A-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율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변경	3, 5(6)	형 태	• 별표2의 A-2	
			배 치	• 별표3의 A-2	
			색 채	• 별표4의 A-2	
			건 축 선	기정	• 중로2-174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5~6)
				변경	• 중로2-174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5~6), 5(6)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사유
		도면 번호	허용용도	도면 번호	허용용도	
5	6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3,4층에 한함, 다중주택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중 이동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건축 높이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사회 환원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4, 서구 서곶로 307)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둬)

의견서

일시	2023. . .
성명	
주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락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569호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번지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공공청사	서구청	심곡동 280번지	7,214.2		7,214.2		
	2	공공청사	우체국	심곡동 278-7번지	2,987.1		2,987.1		
폐지	3	공공청사	파출소	연희동 712-1번지	510.6	감)510.6	-	건고제690호 (1989.11.24.)	
	4	공공청사	동사무소	연희동 712번지	1,207.2		1,207.2		
	5	공공청사	소방서	심곡동 303번지	3,859.2		3,859.2		
	6	공공청사	경찰서	심곡동 281-1번지 일원	15,106.3		15,106.3		
	7	공공청사	공무원 교육원	심곡동 307번지	7,643.5 (62,105.9)		7,643.5 (62,105.9)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3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 면적: 510.6㎡	· 장기 미집행 공공청사(파출소)를 폐지하고 기조성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으로 변경

-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	주차장	노외주차장	연희동 706번지	821.4		
	-	주차장	노외주차장	연희동 707-1번지	584.8		
신설	-	주차장	-	연희동 712-1번지	510.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510.6㎡	· 장기 미집행 공공청사(파출소)를 폐지하고 기조성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으로 변경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3, 서구 서곶로 307)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의견서

일시	2023. . .
성명	
주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락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572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15-1번지 외 1필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근린생활시설용지(C-1)(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C-1	62	6,804.1	1	199.0	1	1,327.7	
			2	1,128.7			
			3	336.3	3	336.3	
			4	707.6	4	707.6	
			5	896.2	5	896.2	
			6	623.3	6	623.3	
			7	316.6	7	316.6	
			8	1,234.3	8	1,234.3	
			9	723.4	9	723.4	
			10	638.7	10	638.7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기정		변경		변경사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62	1	199.0	1	1,327.7	○ 획지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함
	2	1,128.7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4, 서구 서곶로 307)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됨)

의견서

일시	2023. . .
성명	
주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락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